

KIS Podcast

# 공정거래법 Special Report에 대한 FAQ

기업평가본부 전지훈 연구위원  
IS실 최 영 실장

---

# 공정거래법 관련 KIS Special Report

[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Part I\): 공정거래법 주요 규제와 관련 사례분석\(2019.03\)](#)

[그룹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Part II\):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과 모니터링 요소\(2019.03\)](#)

[공정거래법 개정, 그룹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될 전망\(2020.12\)](#)

# KIS Podcast - 공정거래법 Special Report에 대한 FAQ

## Q1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 크게 독과점에 대한 규제와 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로 구성

###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성

현행	개정 후(2021.12.30 시행)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지주회사, 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span style="float: right;">① 독과점</span>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독과점사업자 등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권한 부여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기업 결합을 통한 경쟁 제한행위 규제 지주회사 설립/신고 및 행위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요건, 공시의무 및 규제(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담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불공정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사업자단체	사업자단체의 행위제한 등
제9장 전담기구	제8장 전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및 역할 <span style="float: right;">② 불공정거래</span>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치 및 역할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공정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관련 절차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
제11장 손해배상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제12장 적용제외	제13장 적용 제외	법 적용 제외대상
제13장 보칙/제14장 벌칙	제14장 보칙/제15장 벌칙	비밀엄수 의무, 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등

# KIS Podcast - 공정거래법 Special Report에 대한 FAQ

## Q1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달라.

- 공정거래법: 대기업집단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대한 규제 → 그룹 구조 개편의 가이드라인
- 그룹 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 규제는 크게 아래 5가지 항목으로 구분 가능

### 그룹 구조개편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주요 항목

구분	규제 대상	관련 법 조항	최근 주요 사례그룹
지주회사 행위제한	지주회사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롯데, 현대중공업, SK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up>주2</sup>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채무보증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10조의 2, 제14조	롯데, 농협, 하림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11조, 제14조	삼성
내부거래 규제	사업자(부당지원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 <sup>주2</sup> (사익편취)	제23조, 제23조의 2	한화, SK, LG, GS, 대림

주1) 상기 조항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등은 별도조항법 제16~18조, 제24~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2) 공정위에서는 매년 직전연도말 소속 국내회사의 합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그 중에서도 10조원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

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최상위 지배자)인 기업집단 등은 제외

자료: 당사 정리

## Q2 공정거래법의 어떤 부분들이 개정된 것인지?

- 40년만의 전면개정으로 다수의 조항 변경 → 이를 반영한 그룹의 지배구조 및 사업전략 변화 모니터링 필요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요건 강화는 지배구조 개편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요소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의 경우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영향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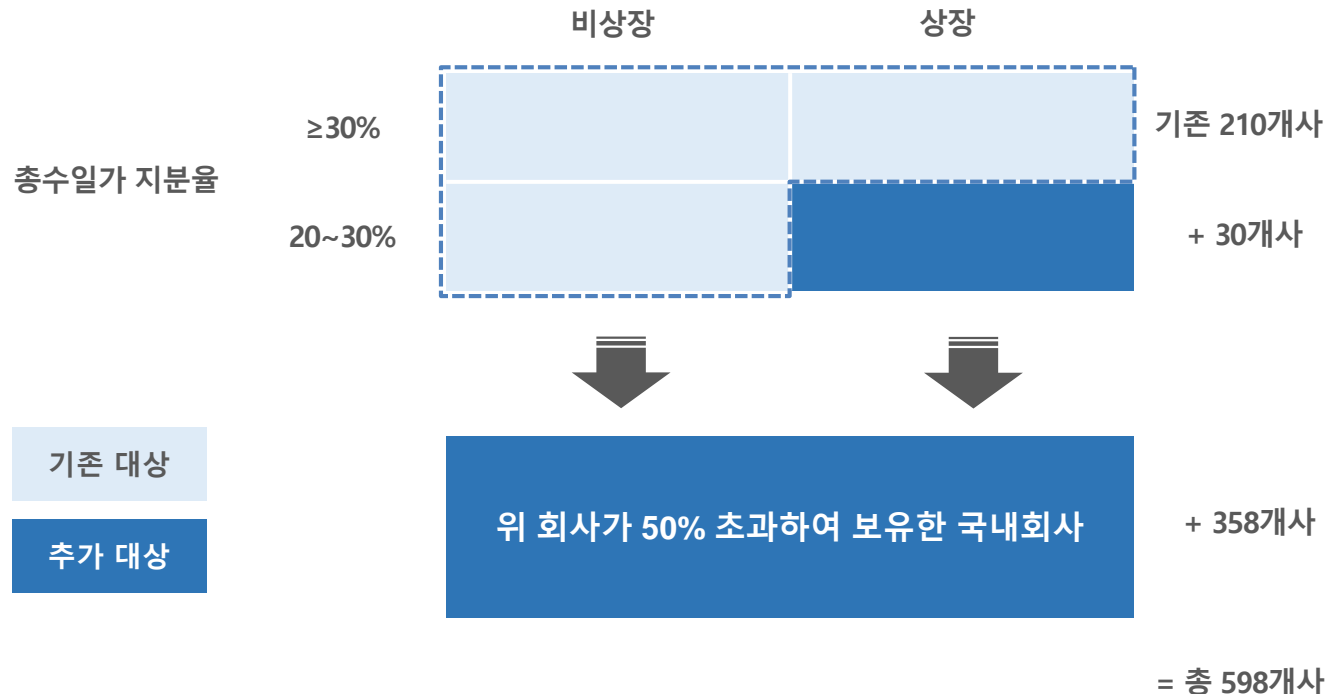
###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규제 대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요건 강화	- 지주회사 행위제한 중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 상장사 20% → 30%, 비상장사 40% → 50% -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및 편입된 자회사·손자회사가 대상(기존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도 해당)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시 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 제한 - 법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정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 합병, 영업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 내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하였으나, 합병 등의 상대방이 계열사인 경우는 금지로 변경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사 의결권 제한, 계열사가 상장사인 경우 임원임면, 합병 등에 한하여 특수관계인 합산 15% 내에서 허용(금융회사 의결권 제한과 예외조건 동일)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 계열회사, 20% 이상 비상장 계열회사 →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국내 계열회사 및 이들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국내 자회사
형벌규정 정비	- 일부 위반행위의 형벌규정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한도 2배 상향: 불공정거래행위(관련매출 2% → 4%), 시장지배력 남용(관련매출 3% → 6%), 부당한 공동행위(관련매출 10% → 20%)
기타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 벤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총자산이 GDP 0.5% 이상) -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

## Q3 사익편취 규제 개정,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가?

-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2020년 210개)  
 변경: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국내회사 및 이들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국내 자회사(598개)
-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30개)와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국내 자회사(358개)가 추가 대상

### 사익편취 규제 해당 업체 변화



## Q4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인지?

- 규제 대상일지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 할 경우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드시 지분이나 사업을 처분할 필요는 없음  
: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회사간 수직계열화(효율성), 공장, R&D 등 필수시설의 구축(보안성) 등의 거래는 규제 가능성 낮아
- 다만, 과거 공정위 기자간담회(2018.6) 내용 등 감안시 **물류, SI, 광고, 부동산 개발** 등 특정 업종은 정상가격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 높아 모니터링 필요

### 사익편취 규제에서 금지하는 행위

금지 행위 유형	예외 대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상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상조건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일감몰아주기')	①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자료: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 Q5 법 개정에 대응하여 어떤 종류의 구조개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 법 개정이 2018년 예고된 이후 각 그룹들 선제적 대응 → 대규모 구조 개편 가능성 낮음
- 단,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소적인 지분 변화나 사업구조 개편 가능성 상존
- 그룹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사익편취 규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 또는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앞두고 있는 그룹(지주회사 요건 강화)들의 개편속도 빨라질 수 있어
- 그룹 외부로의 지분 매각이나 분할/합병, 계열사간 지분교환 또는 외부 투자자와의 TRS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전망

### 주요 구조개편 사례

그룹명	회사명	내부거래 비중('17)	총수일가(모회사) 지분		처리 방식
			변경 전	변경 후	
현대차	이노션	57.1	29.99	19.69	외부매각('19)
SK	에스케이디앤디	64.0('11)	24	-	외부매각('18)
	에스케이해운	34.1	57.2(SK)	-	외부(PEF) 매각('18)
LG	판토스	69.6	19.9	-	외부매각('18)
	서브원	74.3	100(LG)	39.9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MRO사업부문 분할 후 외부매각('19)
	엘지씨엔에스	57.8	84.95(LG)	49.95(LG)	외부매각('20)
GS	지에스아이티엠	70.6	80.6	16.1	외부(PEF) 매각('18)
	엔씨타스	26.5	100	-	청산('18)
한화	한화에스앤씨	67.6('16)	100	-	정보시스템 사업부문 분할 후 지분 외부매각 및 합병('18)
	태경화성	81.5(매입비중)	100	-	청산('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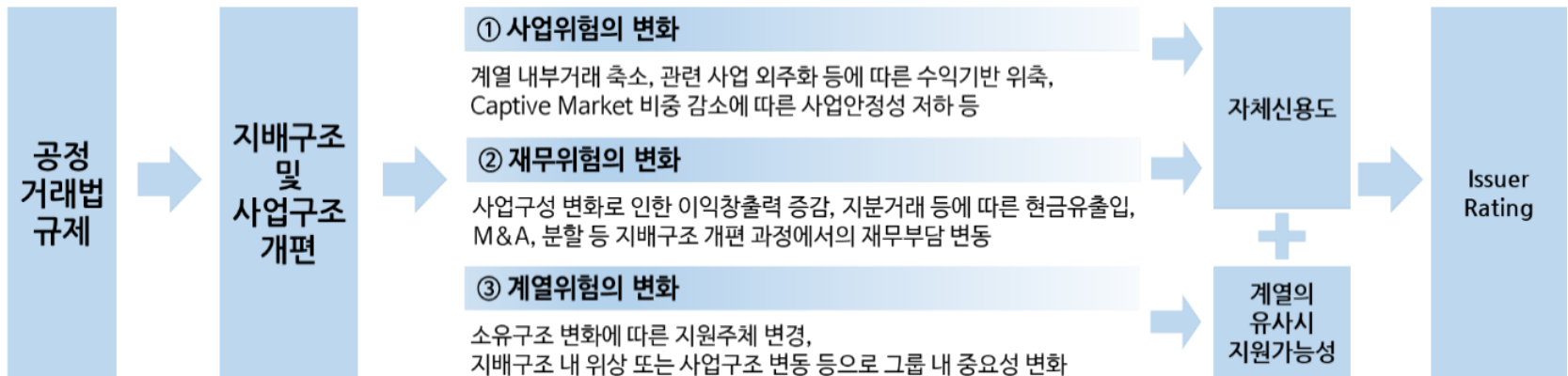


## Q6 구조개편이 신용등급에는 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 개편과정에서 사업구조가 변하거나 소유구조 또는 계열 내 위상이 변화할 경우 신용도 변화 가능
-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는 자체신용도, 계열위험의 변화는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 특히 신용등급에 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업체일수록 등급변동 가능성 높을 전망

: ①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와 연관되고, ②수직계열화가 아닌 내부거래 비중이 크고, ③계열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반영된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할 예정

### 공정거래법과 구조개편, 신용평가의 흐름



##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전지훈 연구위원

02.787.2243

[jihoon.jeon@kisrating.com](mailto:jihoon.jeon@kisrating.com)

## IS실

최 영 실장

02.787.2231

[young.choi@kisrating.com](mailto:young.choi@kisrating.com)



# Disclaimer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시장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시장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traditional)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채권평가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 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스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스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 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되어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